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98
----------	------

제출년월일 : 2009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325(2009.9.30) 및 충청북도 세정과-12126 (2009.10.1)호에 의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른 후속 조치.

○ 제천시세 감면조례가 2009.12.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775호(2007.4.13)로 개정된 「제천시세 감면조례」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의 규정에 의한 일몰시한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함.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안이 국회 상정되어 있어 1년 간만 유예(“11시행)

○ 감면 폐지

가. 감면 대상이 실효성이 없거나 미미한 감면인 경우

-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현행조례 제14조)
-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현행조례 제8조)

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현행조례 제17조)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현행조례 제31조)
-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현행조례 제24조)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현행조례 제25조)

다. 지방세법 이관 및 중복인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이관을 위해 '09.9.30 현재 국회 상정으로 조례 폐지(현행조례 제7조의1)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법(지방세법 제273조)감면과 중복으로 삭제

○ 관련법을 개정사항 반영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0분의 1을 적용으로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 상쇄(현행조례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현행조례 제2조)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09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폐지(현행조례 제18조)

○ 감면조례상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명확화하고 지방세법 §112②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은 보칙(조례 제34조의1)으로 이관

○ 감면신청서식은 시세감면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별지 제1,2호 서식 삭제)

- 표준조례안 수정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으로 변경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현행조례 제 6조)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현행조례 제13조)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입

5. 관계법령 : 불 입

-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 충청북도 세정과-12126 (2009.10.1)호 지방세감면표준안 시달
- 충청북도 세정과-17894 (2009.10.15)호 표준안 일부수정분(1차)
- 충청북도 세정과-18144 (2009.10.20)호 표준안 일부수정분(2차)

- 불입
- 1. 의안전문 1 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 3. 관계법령 1 부
 -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 부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한다.

제4조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6조 중 “운영하는”을 “설치·운영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를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로 한다.

제7조의1을 삭제한다.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을 각각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각각 “임대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을 각각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한다.

제13조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를 “「농

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물생산단지
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
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
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5장(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을 삭제 하고, 제6장을 제18조부터 제32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
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
용하여 부과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주택을 제외한다)”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로 한다.

제21조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천시세감면 신청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u>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u>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②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u>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u>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p> <p>-----</p> <p>-----<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u>-----</p> <p>-----</p> <p>-----</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u>운영하는</u>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p> <p>-----</p> <p>-----<u>설치·운영하는</u>-----</p> <p>-----</p> <p>-----</p>

현행	개정안
<p>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 ----- -----</p>
<p>제7조의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p><삭제></p>
<p>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생략)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 7. (생략) 	<p>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p><삭제></p> <p><삭제></p> <p><삭제></p> <p>5. ~ 7.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 ----- ----- ----- ----- ----- ----- -----</p>
<p>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p>	<p><삭 제></p>
<p>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p>	<p>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 ----- --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 를 적용한다.</p>

현행	개정안
<p>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강연</p> <p>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강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 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imes 365) / \text{영업기간(일수)}$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p>	<p>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u>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u></p>	<p>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u><단서 삭제></u></p>
<p>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 2. (생략)</p>	<p>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p>-----</p> <p>-----</p> <p>-----</p> <p>-----<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u>-----</p> <p>-----</p> <p>1.~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p> <p>-----</p> <p>-----</p> <p>-----</p> <p>-----부동산에 대하여는</p> <p>-----</p> <p>-----</p> <p>-----</p>
<p>제24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종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삭 제></p>
<p>제25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u>「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 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u></p>	<p><삭 제></p>
<p><신 설></p>	<p>제34조의1(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3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천시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u>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u>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5조(감면신청 등) ①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 ----- ----- ----- ----- -----</p> <p>②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p>

□관계법령

지 방 세 법

[일부개정 2009.6.9 법률 9780호]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9.21 행정자치부령 107호]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개정 1988.5.7>)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5.7, 1998.7.23, 2005.2.1>

1. 과세면제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325(2009. 9. 30)호의 이첩입니다.
2. 지방세 불법안의 시행시기 조정('10년→ '11년)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말까지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2010.1.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 불 임
1.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검토 결과 1부.
 2. 표준 감면조례안 1부.
 3. 개별 감면조례안 1부.
 4. 표준감면조례 신규조문 대비표 1부. 끝.

충청북도지사

수신자 청주시장(세정과장), 충주시장(세정과장), 제천시장(세정과장), 청원군수(재무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세정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재무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12126 (2009.10.01.) 접수 세정과-17050 (2009.10.01.)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청북도청 / http://www.cb21.net/

전화 043-220-2754 /전송 043-220-2759 / wiseyumi@korea.kr / 공개

‘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검토 결과

2009. 9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I. '10년 감면조례 표준안 개요

< 감면조례 표준안의 시달 근거 >

- ◆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 행안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
- ※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지방세법 제9조)

□ '10년도 개정대상 현황

- 표준 감면 조례안 : ('09년) 134건 → ('10년) 115건
 - ※ 33건 현행유지, 19건 폐지, 82건 정비
- 개별 감면 조례안 : ('09년) 106건 → ('10년) 92건
 - ※ 92건 현행유지, 14건 폐지

□ 그 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감면조례 표준안 마련 및 자치단체 의견 수렴 : '09.9.17~9.24.
- 지방감면조례 표준안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 시달 : '09.9.30.
- 지방자치단체별 감면조례 개정('10.1.1.시행) : '09.12.31.까지
 - ※ 자치단체는 감면조례표준안의 범위내에서 감면조례 개정 추진

Ⅱ. '10년도 표준 감면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

Ⅰ 감면 폐지

1.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

- 주민공동체가 공동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화물차의 택배차 전환에 따른 감면

2.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 주차장용 부동산, 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광산지역·기지촌·전쟁기념사업회·한국노동교육원에 대한 감면
- ※ 지역별로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 감면조례 허가 신청

3. 지방세법 이관 예정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09.9.30 현재 국회 상정)

Ⅱ 자치단체 건의사항 반영

1.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정비

-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구성과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감면 확대

현 행	개 정 안
<p><u>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u> (단,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가시 추정)</p>	<p><u>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u> (단, (3)년 이내 소유권 이전시 추정) 세대분가시 추정규정 삭제</p>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현 행	개 정 안
<p>노인복지시설을 <u>설치하기</u>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p>	<p>노인복지시설을 <u>설치·운영하기</u>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p>

- ※ 현행 지방세법상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272⑤)

III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1.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정비

- 아파트형 공장의 근거법령(인용규정) 개정에 따른 반영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2조제13호

2.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 상쇄

현행	개정안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 <u>1000분의 1.5 적용</u>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 <u>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 적용</u>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개정('09.2월)

개정전			개정후			
0.4억이하	1억	1억초과	0.6억	1.5억	3억	3억초과
0.15%	0.3%	0.5%	0.1%	0.15%	0.25%	0.4%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정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

-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

* 전·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IV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비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09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감면규정 정비

현행	개정안
7인승~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 '08.1.1.이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09년말까지 감면	7인승~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 <삭제>

※ 감면조례 상 감면시한('09년말)이 도래하여 일몰이 도래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폐지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자동차

예) 그레이스, 봉고, 프레지오, 이스타나, 베스타 등

V 기타 감면규정 정비

-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명확화(20건)
- 「지방세법」 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 정비(5건)
- 지방세법 §112②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 정비(23건)
- 장애인의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시 장애인 범위 조정

Ⅲ. '10년도 개별 감면조례안 정비 내용

※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전 협의 완료

1.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례 폐지

- 서울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286조제4항
-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5건) ⇒ 지방세법 제280조제6항

2. 감면목적이 달성된 감면조례 폐지

- 부산·경남경마장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대한 감면
 - 해당 조례의 적용기간(부칙)은 감면액이 346억5천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로, '09년 상반기에 기 도달함
- 광주 평동산업단지 및 대전과학산업단지 지정지구 내 자경농지
 - 지정지구 내 토지 수용 완료

3.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감면조례 폐지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경주 보문·감포관광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4. 정비 예정 감면조례

- 울산항만공사(2건)
 - 타 지역 항만공사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 예정
- 부산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감면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폐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비 예정

10년 표준 감면조례안

시·군세 감면조례

○○도○○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00시(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시각장애 4급인 장애인에 대한 감면 적용은 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결정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00특별시·

- 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00특별시장·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00특별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내에서 조정가능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을 25%내에서 조정가능

제14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

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 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 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7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

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00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00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00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00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제1

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같은조제5항은 15년의 범위안에서, 같은조제12항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을 조정 가능

제2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0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00 농공단지
2. 00 농공단지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범위 안에서 자율 결정함.

제26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감면여부 결정

제2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

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00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00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00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0년 개별 감면조례안

시·군세 감면조례

제00조 【충청북도 제천시·충주시·음성군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관련문서	표준안 수정통보(사유)	조치내용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분 통보 도 세정과-12877 (2009.10.15)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일부개정 조례에 반영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분 (2차) 통보 도 세정과-13186 (2009.10.20)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부개정 조례에 반영
검토자 의견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를 “도지사가”로 한다는 표준안 시달시 “10. 문화재에 대한 감면: 현행 유지”로 조례개정 불필요하여 개정안에서 제외	현행 유지로 조례 미 개정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수정분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404(2009. 10. 13)호의 이첩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325(09.9.30)호 및 도 세정과-12126(09.10.1)호로 통보된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군세 감면 일부를 불임과 같이 수정하여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불 임 감면조례 표준안(수정분) 1부. 끝.

충청북도지사

수신자 청주시장(세정과장), 충주시장(세정과장), 제천시장(세정과장), 청원군수(재무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세정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재무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12887 (2009.10.15.) 접수 세정과-17894 (2009.10.15.)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청북도청 / <http://www.cb21.net/>

전화 043-220-2754 /전송 043-220-2759 / wiseyumi@korea.kr / 공개

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09.10.13. 수정분)

신구조문 대비표

기 통보안(‘09.9.30)	수정안(‘09.10.13)	사유
제0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0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u>설치·운영</u> 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자치단체 건의를 통해 개정된 사항이 재산세 부분에 미 반영되어 정정

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09.10.13. 수정분)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감면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10. 문화재에 대한 감면: 현행 유지

도	시·군
도	<p>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00특별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00특별시·광역시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00특별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p>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수정분(2차)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458(2009. 10. 19)호의 이첩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325(09.9.30)호 및 도 세정과-12126(09. 10.1)호로 통보된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일부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 임 감면조례 표준안(수정분-2차) 1부. 끝.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세정과장), 충주시장(세정과장), 제천시장(세정과장), 청원군수(재무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세정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재무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13186 (2009.10.20.) 접수 세정과-18144 (2009.10.20.)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청북도청 / http://www.cb21.net/

전화 043-220-2754 /전송 043-220-2759 / wiseyumi@korea.kr / 공개

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 수정분(2차)

신구조문 대비표

기 통보안('09.9.30)	수 정 안('09.10.19)	사 유
<p>제14조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p> <p>-----</p>	<p>○ 인용 법률 개정사항 반영</p> <p>-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p> <p>※ '09.11.28.시행 예정</p>

제천시 공고 제 2009 - 1296

제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13

제 천 시 장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325(2009.9.30) 및 충청북도 세정과-12126 (2009.10.1)호에 의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른 후속 조치.

○ 제천시세 감면조례가 2009.12.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775호(2007.4.13)로 개정된 「제천시세 감면조례」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의 규정에 의한 일몰시한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함.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안이 국회 상정되어 있어 1년 간만 유예(‘11시행)

○ 감면 폐지

가. 감면 대상이 실효성이 없거나 미미한 감면인 경우

-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현행조례 제14조)
-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현행조례 제8조)

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현행조례 제17조)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현행조례 제31조)
-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현행조례 제24조)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현행조례 제25조)

다. 지방세법 이관 및 중복인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이관을 위해 '09.9.30 현재 국회 상정으로 조례 폐지(현행조례 제7조의1)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법(지방세법 제273조)감면과 중복으로 삭제

○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0분의 1을 적용으로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 상쇄(현행조례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현행조례 제2조)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09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폐지(현행조례 제18조)

- 감면조례상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명확화하고 지방세법 §112②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은 보칙(조례 제34조의1)으로 이관
- 감면신청서식은 시세감면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별지 제1,2호 서식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06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64, FAX 641 - 5579 담당자 : 엄 복 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세무주 사보	세정팀장	세정과장			
엄복철	이용덕	11/09 반병렬			

결과보고서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09-1296호
3. 공고기간 : 2009. 10. 15. ~ 11. 6.(21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37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붙 임 : 공고안 1부(붙임) 끝.